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98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안 제13조)	2
2. 개정안 부칙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등 24인

2. 발 의 일 : 2025. 12. 8.

3. 회 부 일 :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안 제13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실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략)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u>공표하여야</u> 한다.	② ----- ----- ----- ----- ----- <u>평가하여 공표하여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실태조사</u>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④ ----- ----- ----- <u>실태조사·평가</u> ----- ----- ----- -----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조사</u> 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u>조사</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u>조사·평가</u> ----- ----- <u>조사·평가</u> ----- -----.

나. 검토의견

□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처음 실시하였는데, 2020년까지 총 7주기의 실태평가가 이루어졌고, 2022년도에 8주기 실태평가를 위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으나¹⁾, 2023년도부터 실태평가는 미실시되고 실태조사만 실시됨.

□ 2023년도에 실태평가가 미실시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제정되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재량규정)²⁾, 2022년 법 개정³⁾에

1) 2022.11.2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보고서 발행

2) 실태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님. 교육부는 대학의 장애학생 선발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학생의 접근성·편의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강구하기 위하여 평가로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3)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따라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가 전면 의무화 되면서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지원 실태평가가 미 실시되고, 실태조사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였 음4).

[실태조사 관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2항 개정 연혁]

- (‘0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6)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22)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전면적 의무화

자료 : 교육부

□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⁵⁾에 따른 348개 대학의 428개 캠퍼스 중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98.8%)가 참여하였는데, ①선발, ②교수·학습, ③시설·설비의 3개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⁶⁾로 실시되었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 등

4) 2020년까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와 함께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되었음.

5)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6) 1차 서면평가(423개 캠퍼스), 2차 현장방문평가(191개 캠퍼스: 45%표본선정), 3차 종합평가(1차, 2차 결과 종합 및 등급 판정)

급이 39개(9.2%)이고, ‘우수’ 93개(22.0%), ‘보통’ 177개(41.8%), ‘개선요망’ 114개(27.0%)로 나타났다⁷⁾.

□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참여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 주기별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수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의 경우 전체 평가점수가 70.9점으로 201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평가 대비 2020년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개선요망’ 등급(27.0%) 대학의 비율이 1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20년 평가의 종합적인 결과를 통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의 전반적인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 및 학습권 보장이 한걸음 더 도약한 것을 알 수 있음⁸⁾.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평균 점수 및 등급)]

평가 연도	‘11년	‘14년	‘17년	‘20년
평균점수	59.0점	61.1점	66.7점	70.9점
(등급)	(개선요망)	(개선요망)	(보통)	(보통)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2021.2.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등급별 비율)]

구 분	‘17년	‘20년	등급 변화 비율
최우수	7.8%	9.2%	1.4%p 향상
우 수	16.1%	22.0%	5.9%p 향상
보 통	38.6%	41.8%	3.2%p 향상
개선요망	37.5%	27.0%	10.5%p 감소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2021.2.9.)

7) 교육부 보도자료,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2021.2.9.)

8) 교육부 보도자료,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2021.2.9.)

- 이처럼 실태평가 실시로 참여대학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평가 뿐만 아니라 평가 주기별 결과의 비교를 통해 지원 사업의 성과 또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
-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은 2020년 실태평가를 실시한 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동 연구에 대한 보고서¹⁰⁾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여건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¹¹⁾
- 이와 달리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된 자료와 심층 현장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태조사의 의미와 목적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고¹²⁾, 실태조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이 우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대학이 시정해야 할 동기 및 대학에 부여하던 강제성과 유인책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실태조사의 경우 대학인증평가나 구조개혁평가에 포함되는 장애학생 관련 요소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방안이 고려되고,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계획’ 등과 같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9) 2020년 평가의 종합적인 결과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이 전반적으로 향상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습권 보장이 한걸음 더 도약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대학의 노력을 비롯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부에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 (2021.2.9.)].

10) 발행일 2021.11.26.

11) p17

12)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종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p213

하며,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의 결과를 단기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정책의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¹³⁾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 뿐만 아니라 대학평가의 성격이 아닌 통계 조사의 성격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에 대한 대학의 관심 감소, 지원 예산 및 인력 감축이 우려된다는 지적¹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를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이 적극적인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강구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찬성 의견임.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신중 검토 : 경기, 강원, 전북)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규정할 경우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업무를 교육 현장에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평가를 반영한 결과가 공표될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기관 서열화가 초래될 수 있음. 또한 평가 목적, 범위, 운영 방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책무를 시·도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3)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종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p215

14)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종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p213

- (일부수정 : 충북)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평가 보다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유 및 개선 계획 수립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신중 검토 : 가톨릭대, 동명대, 동의과학대, 성결대, 성신여대, 부산과기대, 부산디지털대) 실태조사로 전환되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로 재전환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약화되고, 이는 현장의 행정적 혼선 및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함. 또한, 평가는 대학별 상이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일률적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는 오히려 장애학생의 개별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자료 : 교육부

□ 다만, 개정안은 제1항의 특수교육 실태와 제3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2026년도에 9주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예비조사 연구가 실시되어 결과보고가 이루어졌고¹⁵⁾, 이에 맞춰 실태조사가 준비 중이므로¹⁶⁾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교육부도 2026년 실태조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부칙으로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5) 각각 2025년 12월 초에 결과보고가 이루어짐.

16)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9주기)의 경우 5~6월에 대학교 설명회가 있고, 7~9월에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문 의 처
02)6788-5186